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12. 9(목)	담당부서	산업기술시장혁신과
담당과장	정권 과장(044-203-4540)	담 당 자	최재혁 사무관(044-203-4542)

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**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**
- **합리적 이익배분 위한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제정**
- **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의 협업 촉진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문승욱)는 산업데이터의 생성·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**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** 제정안이 '21.12.9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제정안은 **조정식 의원**이 발의('20.9월) 한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」, **고민정 의원**이 발의('20.10월) 한 「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」, **양금희 의원**이 발의('20.12월)한 「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」을 병합한 안이며,

○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**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**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* 조정식 의원('20.9월), 고민정 의원('20.10월), 양금희 의원('20.12월) 발의 →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('20.11월) → 법안소위('21.3월~12월) → 위원장 병합안으로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('21.12월) → 법사위('21.12월) → 본회의 통과('21.12월)

□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**디지털 기술을 적용**함으로써 **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**하기 위한 **제도와 지원근거**를 담았다.

○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**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**하고,

○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**지원 근거를 명시**하였으며,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**추진체계도 마련**하였다.

❶ 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

□ 제정안은 **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**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**새롭게 생성한**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**사용·수익할 권리**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.

○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,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**투자를 하도록 유인**하고, 스스로 **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**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,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, **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**, 산업데이터를 **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**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.

○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**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**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□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·수익할 권리를 **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** 하고,

○ **고의 또는 과실**로 이를 위반하여 **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**는 **손해배상 책임**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하였다.

❷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

□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**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**하였다.

○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**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**하였다.

□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,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**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**하도록 했다.

❸ 선도사업을 선정 · 지원하고 확산기반을 구축

□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**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**를 규정하였다.

○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**선도사업을 선정**하여 **규제개선과 행정·기술·재정적 지원**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·이전될 수 있도록 **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**도 지원한다.

○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**기술·장비·SW 개발**을 지원하고,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**금융·세제지원**의 근거를 규정하였다.

○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**전문인력을 양성**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**고용**도 지원한다.

□ 산업데이터의 수집·분석·가공, 거래행위의 알선,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**활용지원 전문회사**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.

□ 또한,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**협업지원센터**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❹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심의

□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**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**하도록 **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**하였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**정부위원**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**민간위원**으로 이뤄진 **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**하고,

○ **3년 단위 종합계획**의 수립·시행·변경과 제도정비, 기반조성, 표준화, 기업 지원 등 **주요 정책을 심의**한다.

□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**정부로 이송**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**후속 절차**를 거쳐 **약 1개월 후 공포**될 예정이며, 부칙에 따라 **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**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(☎ 044-203-4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요약

〈 ❶ 총 칙 〉

□ (**제1조 : 목적**) **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** 및 **디지털 신기술의 산업적용**으로 **디지털 전환 촉진** → 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

□ (**제2조 : 정의**) **산업데이터***, **산업데이터 생성·활용**, **산업 디지털 전환**** 등 법상 **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**

* 산업데이터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·생산·유통·소비 등 활동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

**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련의 행위

○ 「산업발전법」상 산업, 「광업법」상 광업, 「에너지법」·「신재생에너지법」 관련 산업으로 **산업 범위 규정**

□ (**제3조 : 국가 등의 책무**) 국가·지자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 의무

□ (**제4조 : 다른 법률과의 관계**)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**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**에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

○ 특히,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따르도록 명시(제4조2항)

〈 ❷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〉

□ (**제5조 : 종합계획의 수립 등**) 법상 목적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'**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**'을 **3년 단위로 수립·시행**
(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)

□ (**제6조 : 실태조사 등**)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관련 현황, 통계 및 실태에 대한 조사·작성 가능

□ (**제7조 :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**)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**주요 정책·계획 심의** 및 **자문** 등을 위해 **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** 구성

□ (**제8조 : 위원회의 기능**) 종합계획의 **수립·시행·변경** 및 **실적 점검**, 디지털 전환 관련 **정책·제도 수립** 및 **정비** 등 심의·자문 기능 수행

〈 ❸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〉

□ (**제9조 : 활용 및 보호 원칙**) **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**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**사용·수익할 권리 보유**

*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투자·노력했거나,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시 각자 사용·수익 권리 →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용·수익

○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**사용·수익 권리**를 **공정한 상거래 관행**이나 **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***으로 **침해 금지** →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, 손해배상 책임

*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,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판단

○ 이해관계자간 **활용** 및 **합리적 이익 배분** 등 **계약 체결 노력 권고**

○ 산업데이터 사용·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해 **신뢰성**, **보안성**, **안전성 확보 노력** 등 책임 원칙 제시

□ (**제10조 : 활용 촉진**)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, **산업데이터 활용 계약 가이드라인*** **마련** 등

* 산업데이터 활용·보호 원칙 준수 및 계약 체결 유도를 위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

□ (**제11조 : 활용지원 전문회사**) 산업데이터 **활용지원을 위한 각 호*** **사업**을 영위하는 **회사에 대한 신고제**** 및 **지원 근거 마련**

* ①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타인에게 제공, ②산업데이터 거래행위 알선 및 알선을 위한 정보 수집·분석·제공, ③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집·이용·보관·가공 지원, ④산업데이터 사용·수익할 자를 대행하여 위탁·관리 지원 등

** 전문회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안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

□ (**제12조 : 산업데이터 표준화**)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, 협력 가능성 증대를 위한 **표준화*** **지원 근거 마련**

* 산업데이터 수집·보존·전송, 공유·공동 활용·거래, 연계, 국제 표준 대응 등

□ (**제13조 : 품질관리 지원**) 진단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적절한 데이터 **품질관리 지원**을 위해 **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한 근거 제시**

□ (**제14조 : 플랫폼**) 산업데이터 플랫폼 **구축** 및 **운영**, 관련 **기술·장비 개발**과 **활용**, 플랫폼 간 **상호 호환**, **연계 지원** 등 규정 제시

〈 ❹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〉

□ (**제15조 : 선도사업 선정**) 산업부 장관은 **선도사업*** **발굴** → 디지털 전환 계획서를 신청 받아 **전환위원회 심의 거쳐 선도사업 선정**

□ (**제16조 : 선도사업 지원**)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 대해 **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*** **가능**

* 기술개발 및 사업화, 신제품·신서비스 개발·출시, 개발·생산·유통 과정의 효율화 및 문제 해결,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 구축 등

□ (**제17조 : 규제개선 지원**)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**규제개선 신청 → 관계 기관 규제 개선 노력**

○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여 **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요건·절차**에 따라 **특례 부여 신청 가능**

□ (**제18조 :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**) 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공동 관리·감독

〈 ❺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〉

□ (**제19조 : 협업 지원센터**) 민간 디지털 전환 컨설팅, 데이터 표준화, 협력사업 발굴 등 지원을 위한 **협업 지원센터 지정 규정** 마련

□ (**제20조 : 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**) **기술·장비, 제품·서비스**의 **개발 촉진**을 위해 각 호*의 사업 추진 가능

* 기술·서비스 실태·통계 조사, 개발 및 사업화, 평가 및 활용, 기반 구축 등

□ (**제21조 : 전문인력의 양성 등**) 산업 디지털 전환 **전문인력 양성** 및 **고용지원**을 위해 필요한 시책* 마련 가능

* 전문인력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,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 지원, 직무 표준 마련 및 자격제도 정착, 재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등

□ (**제22조 : 금융 및 세제지원 등**) 금융, 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

□ (**제23조 : 국제협력 등**) 국제기구, 외국 정부·기업·연구기관 및 단체와 **국제 협력 활성화 노력** 규정

□ (**제24조 : 우수기업 선정·지원**) 산업 디지털 전환 **우수기업 및 기여자 선정·포상** 등 지원시책 마련 가능

□ (**제25조 :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**)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 **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**토록 노력 필요

□ (**제26조·제27조 : 전담기관 지정 및 협회 설립**) **전담기관 지정** 및 **협회 설립 근거**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연·보조 가능 규정 마련

〈 ❻ 보 칙 〉

□ (**제28조 : 재원 조달**)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과 시책 시행을 위한 예산 사업 지원 근거 마련

□ (**제29조 : 권한의 위임 및 위탁**) 이 법에 따른 산업부장관 권한·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가능하게 규정

□ (**제30조 :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**) 전환위원회 위원, 제26조·제27조 전담기관 및 협회, 제29조 위탁 사무 종사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등(수뢰·뇌물제공 등) 규정시 공무원으로 간주